아래 위임약정서는 예시로 참고부탁드리며,

이용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위임내용 및 위임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위 임 약 정 서(1)

본 약정 위임인은 다음 내용을 위임하고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위 임 인 | 회 사 명 |  | 연 락 처 |  |
| 주 소 |  | | |
| 위 임 내 용 | | 온라인내부신고(HOPE-Co.) 서비스를 통한 외부 상담 신고 채널 운영 | | |

※ 위임보수는 임직원수, 위임범위, 예상 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 예정

제1조(보수) ① 위임인은 위임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1. 사건 처리 건수 당 ---만원 (부가세 별도)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건당 --만원(부가세 별도)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.

③ 비용은 매달 1회 특정일에 청구하는 것으로 하되,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청구를 생략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 위임사무 기간은 0000. 0. 0. 이후부터 0000. 0. 0.(0년)까지로 하되, 계약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협조) 위임인은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, 조사일정 협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며,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.

제4조(자료관리) ①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한다.

② 위임사무 종료 시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의 반환을 위임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 등) 수임인은 본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위임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, 계약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감수한다.

0000 년 0 월 0 일

위임인 (인)

수임인 노동·인권 상담 및 신고센터 대표 박진호 (인)

위 임 약 정 서(2)

본 약정 위임인은 다음 내용을 위임하고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위 임 인 | 회 사 명 |  | 연 락 처 |  |
| 주 소 |  | | |
| 위 임 내 용 | | 온라인내부신고(HOPE-Co.) 서비스를 통한 외부 상담 신고 채널 운영 및 독립적·전문적 조사 대행 전반 | | |

※ 위임보수는 임직원수, 위임범위, 예상 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 예정

제1조(보수) ① 위임인은 위임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1. 사건 처리 건수 당 ---만원 (부가세 별도)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건당 --만원(부가세 별도)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.

③ 비용은 매달 1회 특정일에 청구하는 것으로 하되,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청구를 생략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 위임사무 기간은 0000. 0. 0. 이후부터 0000. 0. 0.(0년)까지로 하되, 계약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협조) 위임인은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, 조사일정 협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며,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.

제4조(자료관리) ①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한다.

② 위임사무 종료 시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의 반환을 위임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 등) 수임인은 본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위임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, 계약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감수한다.

0000 년 0 월 0 일

위임인 (인)

수임인 노동·인권 상담 및 신고센터 대표 박진호 (인)

위 임 약 정 서(3)

본 약정 위임인은 다음 내용을 위임하고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위 임 인 | 회 사 명 |  | 연 락 처 |  |
| 주 소 |  | | |
| 위 임 내 용 | | 온라인내부신고(HOPE-Co.) 서비스를 통한 외부 상담 신고 채널 운영, 독립적·전문적 조사 대행, 구체절차 진단 및 체계구축 컨설팅 | | |

※ 위임보수는 임직원수, 위임범위, 예상 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 예정

제1조(보수) ① 위임인은 위임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1. 사건 처리 건수 당 ---만원 (부가세 별도)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건당 --만원(부가세 별도)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.

③ 비용은 매달 1회 특정일에 청구하는 것으로 하되,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청구를 생략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 위임사무 기간은 0000. 0. 0. 이후부터 0000. 0. 0.(0년)까지로 하되, 계약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협조) 위임인은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, 조사일정 협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며,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.

제4조(자료관리) ①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한다.

② 위임사무 종료 시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의 반환을 위임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 등) 수임인은 본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위임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, 계약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감수한다.

0000 년 0 월 0 일

위임인 (인)

수임인 노동·인권 상담 및 신고센터 대표 박진호 (인)

위 임 약 정 서(4)

본 약정 위임인은 다음 내용을 위임하고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.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위 임 인 | 회 사 명 |  | 연 락 처 |  |
| 주 소 |  | | |
| 위 임 내 용 | | 온라인내부신고(HOPE-Co.) 서비스를 통한 노동분쟁 조정 전반 | | |

※ 위임보수는 임직원수, 위임범위, 예상 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합의 예정

제1조(보수) ① 위임인은 위임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.

1. 사건 처리 건수 당 ---만원 (부가세 별도)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인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건당 --만원(부가세 별도)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.

③ 비용은 매달 1회 특정일에 청구하는 것으로 하되,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달은 청구를 생략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 위임사무 기간은 0000. 0. 0. 이후부터 0000. 0. 0.(0년)까지로 하되, 계약종료 시점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협조) 위임인은 위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, 조사일정 협의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며, 수임인은 위임인이 제시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.

제4조(자료관리) ①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한다.

② 위임사무 종료 시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와 자료의 반환을 위임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밀유지의무 등) 수임인은 본 위임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위임인의 명시적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, 계약종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은 모두 감수한다.

0000 년 0 월 0 일

위임인 (인)

수임인 노동·인권 상담 및 신고센터 대표 박진호 (인)